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7.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7호로 2012년 6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7조)

- 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 다.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함.(안 제10조)
- 라.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제31조의2, 제3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적용범위로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제9조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사계약 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지연지급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와 하도급 관련 민원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하도급 관련 내용들을 체계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가 관급공사라는 발주자의 위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설 하도급 공정화를 유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4.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

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